

#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학칙

- 제정 2012.8.8.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제1-2호
- 개정 2013.6.28.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제1-3호
- 개정 2014.3.10.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제1-4호
- 개정 2014.8.28.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제1-5호
- 개정 2015.4.20.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제1-6호
- 개정 2015.8.11.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제1-7호
- 개정 2015.11.13.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제1-8호
- 개정 2016.11.8.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제1-9호
- 개정 2017.2.24. 국립암센터 규칙 제2-362호(직제규정시행규칙)
- 개정 2017.8.24.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제1-12호
- 개정 2018.3.9.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제1-13호
- 개정 2019.1.25. 국립암센터 규칙 제2-409호(직제규정시행규칙)
- 개정 2019.3.19.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제1-14호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학칙은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(이하 “대학원대학”이라 한다)의 전공별 구성 및 편제 등 학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2.24.>

**제2조 (교육목표)** 대학원대학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.

1. 암관리 및 암연구의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한다.
2. 지역사회에 적용이 가능한 이행성연구 전문가를 양성한다.
3. 세계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.
4.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의 기반을 마련한다.

**제3조(학위과정)** 대학원대학에는 석사학위과정(이하 “석사과정”이라 한다)과 박사학위과정(이하 “박사과정”이라 한다)을 두며, 필요에 따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통합된 과정(이하 “통합과정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<개정 2013.6.28., 2016.11.8>

**제3조의2(학·연·산 협동과정)** 대학원대학의 학위과정으로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·운영하는 학·연·산, 학·연 또는 학·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4.8.28.]

**제4조(학과)** ① 대학원대학의 각 과정에는 암관리학과와 암의생명과학과를 둔다. <개정 2016.11.8>

② 학과의 설치,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5조(학생정원)** ① 대학원대학의 학생정원은 「대학설립·운영규정」에 의거 교육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으로 한다.<개정 2013.6.28.>

② 정원 외 학생 입학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 제2장 직제 및 교원

**제6조(조직)** 대학원대학의 조직은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6조의2(산학협력단)** ① 대학원대학에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산학협력단을 둔다.

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3.19.]

**제7조(전임 교원)** ① 전임 교원은 교수, 부교수, 조교수로 구분한다.

② 전임 교원의 임면,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8조(대학원장)** ① 대학원대학에 대학원장을 둔다.

②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대학 업무를 총괄하고 학생의 교육지도를 담당한다.

**제9조(학과장)** ① 각 학과에는 학과장을 두며, 학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

② 학과장은 해당 학과의 학사운영을 담당한다.

**제10조(지도교수)** 학생의 학위논문에 관한 지도 및 기타 학업과 관련된 학생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두며,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 이를 담당하게 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석좌교수 및 겸임 교원 등이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**제11조(석좌교수)** ① 총장은 대학원대학의 설립취지 및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암관리 및 암연구 분야의 권위자로서, 교육·연구경험이 풍부하여 대학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석좌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.

② 석좌교수의 임명, 처우 등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12조(겸임 교원 등)** ① 대학원대학에는 명예교수, 겸임교원, 초빙교원, 시간강사 등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6.11.8>

② 겸임 교원 등의 임용·처우 등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13조(조교)** ① 대학원대학에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② 조교의 임용, 복무,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제 3 장 입학·등록·수강신청

**제14조(입학시기)** 대학원대학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 초 10일 이내로 한다.

**제15조(지원자격)** ① 석사과정과 통합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법률상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. <개정 2016.11.8>

② 박사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법률상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.<개정 2013.6.28., 2016.11.8>

**제15조의2(편입학)** ① 총장은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내·외 대학원에서

1학기 이상 수료한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입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6.11.8]

**제16조(지원절차)** ① 대학원대학의 학위과정에 입학할 지원자는 과정별로 입학지원 서류를 전형료와 함께 제출하고 소정의 입학전형을 거쳐야 한다.

<개정 2013.6.28., 2016.11.8>

1. ~ 4. <삭제 2016.11.8>

② 제1항의 과정별 입학지원 서류 및 지원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6.11.8>

**제17조(입학전형)** ①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.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서류심사
2. 면접고사
3. 기타시험

② 입학기준에 관한 외국어 성적, 입시절차, 전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18조(입학 허가)**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지원자의 입학허가한다.

**제19조(입학등록 및 취소)**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총장이 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납부 및 입학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.

② 총장은 입학이 허가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.

**제20조(재학생 등록)** 재학생은 매 학기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.

**제21조(수강신청 및 변경)** ① 등록을 완료한 학생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지정된 기간 내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수강변경은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, 기간 경과 후에는 수강

과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
**제22조(수강교과목 취소)**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매 학기 초 1개월 이내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“수강과목취소 신청서” 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잔여 교과목은 1과목 이상이어야 한다.

## 제 4 장 학년·학기·수업일수·교수시간·휴업일

**제23조(학년도·학기)** ① 대학원대학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매 학년도는 2학기로 구분한다. 단,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년의 시작과 끝을 변경할 수 있다.<개정 2013.6.28.>

② 제1항의 학기 외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각각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.

**제24조(수업일수 및 방법)** ①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.<개정 2017.8.24.>

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(매 학기 15주)로 한다.<신설 2017.8.24.>

③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 및 제32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29조 교과목 및 교육과정 편성 시 정한다.<신설 2017.8.24.>

④ 수업은 주간에 영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, 강의실 수업, 연구참여 수업, 현장실습 수업 등의 방법으로 한다.<개정 2017.8.24.>

**제25조(교원의 교수시간)** 전임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으로 한다. 다만, 교육과정에 따라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<개정 2014.3.10.>

**제26조(휴업일)**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정 공휴일
2. 국립암센터 개원기념일

② 천재, 지변, 사변, 재해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하여 수업을 할 수 없

을 경우에는 총장은 학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시휴업 또는 휴강을 명할 수 있다.

## 제 5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

**제27조(수업연한)** ① 각 과정의 최소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3.6.28., 2016.11.8>

1. 석사과정 : 2년
2. 박사과정 : 2년
3. 통합과정 : 4년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위수여 요건을 조기에 충족시킨 자는 석사과정은 1년, 박사과정은 6개월, 통합과정은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1.8., 2017.8.24.>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 단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28조(재학연한)** ① 각 과정의 최장 재학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 각 과정의 재학연한에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13.6.28., 2016.11.8>

1. 석사과정 : 4년
2. 박사과정 : 5년
3. 통합과정 : 8년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 학생의 재학연한을 연장 허가할 수 있다.

## 제 6 장 교과·학점·시험·성적·수료·학위수여

**제29조(교과목 및 교육과정)** 각 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, 제24조제3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<개정 2014.3.10., 2017.8.24.>

**제30조(강좌개설)** 개설강좌는 매 학기 각 학과장의 신청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**제31조 (국내외 연수)** 대학원대학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및 국내외 교육·연구기관에서 연수를 한 경우 이에 따른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32조(이수단위)**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.

**제33조(수료학점)** 각 과정을 수료하는데 필요한 최저학점은 석사과정 30학점, 박사과정 30학점, 통합과정 60학점으로 한다.<개정 2013.6.28., 2015.11.13., 2016.11.8>

**제34조(타 대학 학점인정)** ① 각 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입학 전 국내외의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② 각 과정의 학생이 학점교환 협약이 체결되었거나 총장이 지정하는 국내외의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③ 타 대학 학점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35조(학기당 취득학점)** ① 각 과정의 학생은 수료 시까지 매 학기 3학점 이상 12점 이하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점의 초과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36조 (시험)** 학기말에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시험을 실시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
**제37조(성적산정)**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과목별로 시험성적, 출석상황, 연구보고서, 평소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되,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.

등급	A			B			C			F		
	A+	Ao	A-	B+	Bo	B-	C+	Co	C-	F	P	NP
평점	4.3	4.0	3.7	3.3	3.0	2.7	2.3	2.0	1.7	0	Pass	No Pass

② 논문지도 등 일부과목에 대한 성적은 P(Pass) 또는 NP(No Pass)로 부여할 수 있다.

**제38조 (수업출석)** 학생은 수강신청한 전과목의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, 각 과목별 결석일수가 전 수업시간의 6분의 1 이상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. 단,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결석계를 제출하면 수업시간의 6분의 1까지 공결을 인정할 수 있다.

**제39조(재수강)** ① 기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재수강은 기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에 한하며 재수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40조 (학위청구논문 등 제출 및 심사)** ①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위청구논문 또는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6.28., 2016.11.8>

② 학위청구논문 및 연구실적물의 심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41조(수료인정)**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중에서 전 과목의 평점평균이 B-(2.7/4.3) 이상인 자에게는 당해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고 수료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.

**제42조(학위수여취소)** ① 당해 과정의 학생이 필요학점을 취득하고 소정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학위를 수여한다.

② 통합과정 중도포기자가 석사학위 수여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 <신설 2016.11.8>

③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. <신설 2015.4.20, 개정 2016.11.8>

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5.4.20, 2016.11.8>

## 제 7장 휴학·복학·자퇴·제적



**제43조(휴학)**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6분의 5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제1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하게 한다.

1. 「병역법」 제73조제1항에 른 입영 또는 복무
2. 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
3. 만 8세 이하(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)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
4. 기타 부득이한 사유

<개정 2017.8.24., 2018.3.9.>

②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, 통산하여 석사과정은 3개 학기, 박사과정은 4개 학기, 통합과정은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,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학은 최대 4개 학기까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13.6.28., 2016.11.8., 2018.3.9.>

③ 제20조의 재학생 등록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학기 등록금을 면제할 수 있다.<개정 2014.3.10, 2016.11.8>

**제44조(복학)** ① 휴학기간의 만료 또는 휴학사유의 소멸로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복학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복학할 수 있다.

② 병역의무 수행을 위한 군복무 후 복학은 군복무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허가할 수 있다. 다만 군복무 완료 일자가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일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**제45조(자퇴)** ①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퇴할 수 없다.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장이 연서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② 기타 자퇴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46조(제적)**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할 수 있다. 다만 제8호에 의한 제적의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6.11.8>

1. 휴학기간 만료 후 다음 학기에 복학하지 않은 자
  2. 정당한 사유 없이 매 학기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
  3. 정당한 사유 없이 매 학기 수강신청기간 중에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자
  4. 재학연한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
  5. 재학 중 2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
  6. 제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
  7. 이중학적금지원칙을 위반한 자
  8. 재적 중 사망한 자
- ② 기타 제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47조(재입학)** ① 총장은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2년 내에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.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

1. 재학연한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제적된 자
  2.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
- ② 제1항의 기간에 병역의무 수행을 위한 군복무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한다.
- ③ 재입학자가 종전에 취득한 학점은 지도교수, 재입학한 전공의 학과장의 의견을 들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 수 있다.
- ④ 재입학자의 재학기간은 각 과정에 처음 입학한 날로부터 기산한다.

## 제 8 장 비 학위과정

**제48조(비 학위과정)** ① 총장은 필요에 따라 비 학위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 학위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49조(공개강좌)** ① 총장은 교양 또는 학문연구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강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50조(연구과정)** ① 총장은 특정과목수강 또는 특정과제참여 등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연구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 제 9 장 등록금 및 장학금

**제51조(등록금)** ① 등록금의 징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기별 징수를 원칙으로 한다.<개정 2014.3.10.>

② 등록금의 금액 및 납입기일은 매 학기 개시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3.10.>

③ 등록금의 징수, 금액 및 그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개정 2014.3.10.>

**제52조(실비징수)** ①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하여는 연구시설 및 현장의 견학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기숙사 입사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기숙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.

**제53조(장학금)** ① 대학원대학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모범적인 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 제 10 장 포상 및 징계

**제54조(포상)** ① 총장은 대학원대학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
1. 탁월한 창의력을 발휘한 자
2.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
3. 기타 총장이 표창할 만 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의 종류,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55조(학사경고)** ① 총 장은 매 학기 학업성적의 평균평점이 B-(2.7)에 미달한 자에게는 다음 학기 개강 전에 학사경고를 한다.

- ② 총장은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학점 수, 과외활동 등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③ 총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경고를 할 경우에는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 및 학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56조(징계)** ① 총장은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.

- ② 학생을 징계할 경우에는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③ 징계는 근신, 정학(유기, 무기)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.

## 제 11 장 학생활동

**제57조(학생회)** ① 학생의 자치활동 능력을 배양하고 과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생자치단체인 학생회를 둔다.

- ② 학생회는 대학원대학 재학생으로 구성되며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칙으로 정한다.
- ③ 총장은 학생회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, 학생회 활동,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④ 학생회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전임 교원 중에서 학생회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.

**제58조(과외활동)** 과외활동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, 교육·연구 수행과 원내질서 유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적으로 할 수 있다.

**제59조(학생단체의 승인)** ① 학생회 이외의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② 총장은 학생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, 학생단체 활동,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60조 (간행물)** ① 학생회, 학생단체 또는 학생 개인이 신문, 학술지 등의 간행물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고자 할 때 또는 발간된 간행물을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간행물의 편집에 관하여는 총장이 위촉하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

**제60조2(장애학생 지원)** 총장은 장애학생의 학업 및 학생생활을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,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신설 2015.8.11.>

## 제 12 장 대학원위원회

**제61조(대학원위원회의 구성)** ① 대학원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설치한다.

② 대학원위원회는 총장이 위원장이 되며, 연구소장, 부속병원장,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, 대학원장, 혁신전략실장, 사무국장, 대외협력실장, 인재경영실장, 헬스케어플랫폼센터장을 포함한 총장이 임명하는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4.3.10., 2018.3.9., 2019.1.25., 2019.3.19.>

③ 대학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④ 대학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<개정 2014.3.10.>

**제62조(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)**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**제63조(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)**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5.4.20.>

1. 입학, 수료, 학위수여·취소에 관한 사항
2. 학과·전공의 신설, 변경,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
3. 교과외 편성 및 교과 운영, 연구에 관한 사항
4.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5. 대학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6. 비 학위과정,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에 관한 사항
7.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
8. 등록금, 장학금, 연구비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

## 9. 기타 대학원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**제64조(대학원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방법)** 대학원위원회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및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<개정 2014.3.10.>

**제65조(회의록)**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 2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<신설 2014.3.10.>

**제66조(서면결의)**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위원장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.<신설 2014.3.10.>

## 제 13 장 자체평가

**제67조(자체평가)** ① 대학원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·연구 등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총장은 대학원대학의 교육·연구, 조직·운영, 시설·설비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매 2년마다 자체평가를 실시한다. 다만,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에 의한 종합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.

② 자체 평가의 대상은 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」 제6조제1항의 공시대상정보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.

1. 대학원대학 발전계획
2. 교육 및 연구
3. 조직 및 운영
4. 시설 및 설비
5. 기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사항

③ 총장은 대학원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방법, 범위 등 공시에 관한 사항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5.4.20.]

**제68조(자체평가위원회)** ① 총장은 자체평가의 공정성, 정확성, 연속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.

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되며, 자체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무학사팀장으로 한다.

④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자체평가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
2. 자체평가 지표 및 기준의 개발 및 보완
3. 자체평가 결과 공시 및 활용에 대한 사항
4.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

[본조신설 2015.4.20.]

## 제 14 장 보 칙

**제69조(시행세칙)** 이 학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개정 2014.3.10.>

**제70조(학칙개정절차)**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정취지 및 내용 등을 사전에 공고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.<개정 2014.3.10.>

**부칙**<제정 2012. 8. 8.>

(시행일) 이 학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원대학의 설립을 인가(2013.9.10.)한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개정 2013. 6. 28.>

(시행일) 이 학칙은 교육부장관이 대학원대학의 설립을 인가한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개정 2014.3.10.>

(시행일) 이 학칙은 2014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개정 2014.8.28.>**

(시행일) 이 학칙은 201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개정 2015.4.20.>**

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개정 2015.8.11.>**

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개정 2015.11.13.>**

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개정 2016.11.8.>**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, 제15조 및 제16조는 2017학년도 정시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암관리정책학과 및 시스템종양생물학과 재적생은 각각 이 학칙 시행일로부터 암관리학과 및 암의생명과학과 재적생으로 본다.

**부칙 <개정 2017. 2. 24>**

(시행일)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개정 2017.8.24.>**

(시행일) 이 학칙은 201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개정 2018.3.9.>**

(시행일)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부칙<개정 2019.1.25.> (국립암센터 직제규정시행규칙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 등의 개정) 이 규칙 개정에 따라 다른 규칙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규칙	기존	변경
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학칙	교육훈련부장	인재경영실장
	기획조정실장	혁신전략실장

부칙 <개정 2019.3.19.>

이 학칙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하되, 제6조의2는 산학협력단 설립등기 시부터 적용한다.